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 등〉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02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	2
2.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 점검	7
※ 참고자료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10
2. 백년소상공인 식품 관련 법 위반 현황	12
3. 백년소상공인 현황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25.
3. 회부연월일 : 2024.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컨설팅 및 경영개선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백년소상공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u><신 설></u>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략) <u><신 설></u>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¹⁾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④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16조(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시, 계속 유지, 차별성,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백년소상공인의 지정) ①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2제2항의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 가.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 공개
 -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3.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5(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별표 2(참고자료1)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관계 법령”이 무엇인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이 법 제16조의2제2항2)에 따른 유효기

2) 개정안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의2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오기(誤記)로 보임.

간3)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면,

백년소상공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용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더라도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어 보임.⁴⁾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④ 법 제1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4) <참고 입법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

2.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 점검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6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⁵⁾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에 관한 점검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면 백년소상공인의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지정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파악하여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 운영상의 개선·보완할 부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점검 시행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임.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2.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3.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4. 세무·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5.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6. 전통기술의 보존·전수 및 상품화 지원
 7.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8.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9.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10.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465

[참고자료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제1조의5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6조의3 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으로서, 가. <u>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u>	법 제16조의3 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나.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1)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 공개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경고	지정취소
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경고	지정취소

[참고자료2] 백년소상공인의 식품 관련 법 위반 현황

□ 「식품위생법」 위반 백년가게 현황 * 연도별 중복건수 포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건수(개)	11	26	27	33	33	4	134

□ 「식품위생법」 위반 가게 현황(지역별) * 3회 이상 위반 가게는 총 8개

연번	지역	위반 업체수(개)		연번	지역	위반 업체수(개)	
		1회 위반	2회 이상위반			1회 위반	2회이상 위반
1	서울	16	6	10	강원	4	1
2	부산	1	3	11	충북	3	-
3	대구	9	2	12	충남	5	1
4	인천	1	-	13	전북	9	1
5	광주	2	-	14	전남	6	-
6	대전	1	2	15	경북	7	1
7	울산	-	-	16	경남	8	4
8	세종	-	-	17	제주	1	-
9	경기	14	4	합계		87	25

□ 「식품위생법」 관련 연도별(지자체) 행정처분 결과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백년 가게	과징금부과	2	3		2	3	2		12
	영업정지	2		2		2	2		8
	품목제조정지		1						1
	과태료부과	10	5	17	19	16	18	4	89
	시설개수명령	1			1	2	2		6
	시정명령	5	5	10	6	13	13		52
합계		20	14	29	28	36	37	4	168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백년 소공인	영업정지	-	-	2	1	3
	폐쇄명령	-	-	-	1	1
	품목제조조정지	1	-	1	-	2
	과태료부과	-	-	1	1	2
	시정명령	-	1	-	-	1
합계		1	1	4	4	9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구분	2022	2023	2024.8	합계	비고
백년가게	4	4	3	11	미표시 5, 거짓표시 6
백년소공인	2	2	-	4	거짓표시 4

[참고자료3] 백년소상공인 현황

① 백년가게 선정현황(누계) : 총 1,357개사(선정 1,487, 지정취소 △130)

○ 지역별 현황

연번	지역	개수(개)	비율(%)	연번	지역	개수(개)	비율(%)
1	경기	187	13.8	10	충남	73	5.4
2	서울	163	12.0	11	인천	46	3.4
3	경남	110	8.1	12	광주	60	4.4
4	경북	125	9.2	13	대구	78	5.7
5	전북	85	6.3	14	대전	44	3.2
6	충북	86	6.3	15	울산	26	1.9
7	부산	80	5.9	16	제주	19	1.4
8	강원	93	6.9	17	세종	8	0.6
9	전남	74	5.5	합계		1,357	

* 수도권 29.4% 경상 30.7%, 호남·제주 17.5% 충청·강원 22.4%

○ 업종별 현황

업종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개수(비중, %)	912(67.2)	297(21.9)	109(8.0)	39(2.9)	1,357(100.0)

* 단일 제조업을 제외한 제조업 33, 숙박업 3, 농업 1, 축산업 1, 건설업 1

② 백년소공인 선정 현황(누계) : 총 956개사(선정 969, 지정취소 △13)

○ 지역별 현황

연번	지 역	개수(개)	비율(%)	연번	지 역	개수(개)	비율(%)
1	경기	223	23.3	10	충남	35	3.7
2	서울	129	13.5	11	인천	40	4.2
3	경남	62	6.5	12	광주	49	5.1
4	경북	58	6.1	13	대구	55	5.8
5	전북	59	6.2	14	대전	62	6.5
6	충북	36	3.8	15	울산	12	1.3
7	부산	59	6.2	16	제주	7	0.7
8	강원	30	3.1	17	세종	4	0.4
9	전남	36	3.8	합계		956	

* 수도권 41% 경상 25.7%, 호남·제주 15.8% 충청·강원 17.5%

○ 업종별 현황

업종	기계금속	식료품	의류	인쇄	기타	합계
개수(비중, %)	324(33.9)	163(17.1)	113(11.8)	87(9.1)	269*(28.1)	956(100.0)

* 도자기 58, 전자부품 17, 공예품 23, 기타제조(필프종이 등) 171